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67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김현정·박홍배·이기헌

부승찬 • 전재수 • 손명수

이개호 · 정태호 · 김기표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선물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

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다목 삭제 등).

법률 제 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제21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20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18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 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인 회사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u>삭 제></u> 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지 아니한 사람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1조(등록의 직권말소) 제18조 제21조(등록의 직권말소) ------에 따라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 -----선불식 할부거 래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 래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 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